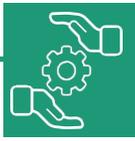


지원자료



- 호흡 보호구를 포함하여 마스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ph.lacounty.gov/masks>을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캘리포니아 주 직업 보건 안전 관리국(Cal/OSHA)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ir.ca.gov/dosh/coronavirus/Non_Emergency_Regulations/을 방문하세요.
- 근로 산재 보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dir.ca.gov/dwc/InjuredWorker.htm>을 방문하세요.
- 장애 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dd.ca.gov/en/Disability/How_to_File_a_DI_Claim_in_SDI_Online을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로스앤젤레스 시에서의 유급 병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agesla.lacity.org을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Cal/OSHA에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방법의 자세한 정보는 dir.ca.gov/covid/workplace-issues.html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LA 카운티 공중 보건국의 격리 지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ph.lacounty.gov/covidcommunity를 방문하세요. 공중보건 위원회 프로그램은 특정 고위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http://ph.lacounty.gov/media/Coronavirus/phcouncils/>을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세요.

COVID-19에 걸리면 종종 질환을 앓을 고위험군일 경우 작업장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다음의 조치를 시행하세요.



- (1) 실내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호흡 보호구를 요청하세요. 실내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또는 공유 차량에 타인과 함께 탑승할 때 착용하세요. 호흡 보호구를 착용하기 힘든 경우 차선책으로 '이중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위에 잘 맞는 천 마스크 착용함) 또는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ph.lacounty.gov/masks를 방문하세요.
- (2) 근무 조건이 허락되는 경우 다른 사람들과 6피트 거리두기를 유지하세요.
- (3) 휴식 시간 동안에 마스크를 벗고 식사나 음료를 마셔야 할 때 다른 사람과 떨어져 실외에서 되도록 하세요. 실내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창문과 문을 열어 두고 식사하세요.
- (4) 안전다면 창문 또는 문을 열어 두세요.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면 공기 중에 비말이 줄어들어 COVID-19에 감염될 위험이 감소합니다.
- (5) 권장하는 모든 최신 COVID-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ph.lacounty.gov/howtogetvaccinated를 참고하세요.
- (6) COVID-19에 확진되면 COVID-19 치료 약을 처방 받아 중증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구 약은 첫 증상이 발생되고 5일 이내에 복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의약품은 무료입니다. 주치의에게 여쭙거나 (833) 540-0473으로 연락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ph.lacounty.gov/covidmedicines를 방문하세요.



COVID-19 안전: 근로자의 권리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www.publichealth.lacounty.gov
4/10/2023

근로자의 권리 안내 책자는 아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publichealth.lacounty.gov/media/Coronavirus/docs/business/Workers_Rights_Pamphlet.pdf



COUNTY OF LOS ANGELES
Public Health

COVID-19 안전: 캘리포니아 근로자의 권리



Cal/OSHA에 따르면,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가 COVID-19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알아두고 위반사항은 다음을 통해 신고하세요:

- 귀하의 상관 또는 안전 관리자와 대화하세요.
- 귀하의 노조 조합원과 대화하세요.
- (213) 576-7451 또는 833-579-0927로 연락하여 Cal/OSHA에 불만사항을 제기하세요.

직원 교육



- 고용주는 직장 내 COVID-19 위험을 파악, 평가, 조치하는 최신의 서면 COVID-19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독립된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고용주의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 (또는 "PPE")



- 귀하의 고용주가 실내에서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무료로 잘 맞는 마스크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마스크를 교체해줘야 합니다.
- 모든 마스크가 어느 정도 보호 효과를 제공하지만 잘 맞는 호흡 보호구, 특히 N95 마스크가 최대의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 실내에서 다른 사람과 근무하거나 자동차에 같이 탑승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잘 맞는 호흡 보호구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잘 맞는 호흡 보호구를 제공하고 밀착되도록 착용하는 법을 포함해 직원에게 착용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귀하가 작업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착용한 것에 보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의료용 마스크나 호흡 보호구가 찢거나 더러워지면 교체 해줘야 합니다. 호흡 보호구를 사용할 경우 제조사의 안내 지침을 따라 사용 기간과 폐기 방법을 확인하세요. 의료용 마스크는 사용한 후에는 폐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h.lacounty.gov/masks에서 확인하세요.



당신의 권리 알아두기.

COVID-19 검사



- 고용주는 직장에서 COVID-19와 밀접 접촉했거나 직장 내 감염 발생 시 노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시간 중 무료로 검사를 제공해야 합니다(지난 30일 이내에 COVID-19에서 회복되어 증상이 없는 근로자는 제외).
- 검사는 고용주, 의사 진료실 또는 보건소(Health Center), 지역 공중 보건국 또는 지역사회 검사소를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 '무료'란 고용주가 검사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검사소까지 교통편과 이동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포함하여 모든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용주는 검사소까지 교통비 (예: 단위 연료당 주행거리 또는 대중교통)을 지불해야 합니다.

유급 병가



- COVID-19에 확진 되어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고용주에게 바로 알려줘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의 영구 유급 병가 규정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고용주는 적어도 1년에 24 시간이나 3 일간의 병가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신체/정신적 질병이나 부상, 예방 치료 또는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하다면 회복하는 시간으로 사용됩니다.
- LA 카운티의 일부 도시는 최소한의 유급 병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시는 해당 근로자가 48시간 또는 연간 6일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장에서 COVID-19에 감염되었다고 생각되면 고용주에게 산재 보상 청구를 제기하여 의료비, 임금 손실 및 질병과 관련된 기타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COVID-19에 확진 되고 직장에 다닐 수 없다면 장애 보험 (DI) 청구를 제기하여 납부할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또는 주나 지역 보건 당국으로부터 COVID-19에 확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직장 내 COVID-19 안전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귀하의 상관 또는 안전 관리자와 대화하세요.
- 귀하의 노조 조합원과 대화하세요.
- (213) 576-7451 또는 833-579-0927로 연락하여 Cal/OSHA에 불만사항을 제기하세요.

